



# 표준이율과 보험료 조정,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

김해식 연구위원

## 요약

■ 표준이율은 책임준비금에 적용할 이자율의 상한을 제시하는 감독수단이며,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급자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최저가격제임. 더욱이 표준이율은 시장경쟁을 전제로 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에서 표준이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표준이율의 본래 목적인 시장경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감독당국은 준비금을 통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료 조정 폭의 정당성 여부는 시장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통해 시장에서 평가하도록 것이 바람직함.

■ 최근 책임준비금의 최저 적립수준을 결정하는 표준이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보험료 조정 수준을 두고 보험회사와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음.

- 장기이자율 하락을 반영하여 표준이율이 4.00%에서 3.75%로 0.25%p 인하됨.
  - 표준이율이란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의 최저수준을 규제할 목적으로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준비금 적립에 요구하는 최고 이자율임.
  -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표준이율 하락에 따라 준비금의 현재가치가 상승하여 그만큼 준비금 비용이 늘어나게 됨.
- 이에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은 표준이율 0.25%p 인하에 따라 10% 수준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sup>1)</sup>
- 감독당국은 금번 표준이율의 하락 폭에 상응하는 보험료 인상 수준으로서 10%는 과도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임.<sup>2)</sup>

1) 연합뉴스(2012. 3. 9), 「보험료 줄줄이 인상, 생명보험 7월부터 10% 인상」.

2) 연합뉴스(2012. 3. 12), 「보험료 인상 폼수에 당국 고강도 대응」.

■ 보험회사는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예정)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때 이자율은 표준이율과 같을 수도 있고 표준이율보다 높거나 낮을 수도 있음.

-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표준이율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표준이율 조정이 그대로 보험료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감독당국의 주장은 일견 타당<sup>3)</sup>
- 그러나 표준이율과 유사한 이자율로 보험료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지난해 이자율 담합 사례는 그런 유인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바 있음.
- 따라서 금번 표준이율 인하와 보험료 조정을 둘러싼 이견은 보험시장의 가격자유화와 시장경쟁의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음.

■ 표준이율은 가격자유화와 시장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임을 고려할 때, 표준이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조정을 시장경쟁을 위축시키는 방향에서 접근해서는 곤란함.

- 표준이율은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할 준비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저수준을 설정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 시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려는 유인을 억제하는 일종의 가격통제수단임.
- 가격통제는 수요자 또는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이 소비자이면 가격상한제(최고가가격제), 보호대상이 공급자이면 가격하한제(최저가격제)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표준이율은 공급자인 보험회사 보호를 목적으로 함.
  - 물론 표준이율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지키려는 데 있으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가 우선적인 목표임.
- 그런데 표준이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은<sup>4)</sup> 표준이율의 목적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 표준이율 조정과 보험료 조정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하고, 보험료 조정 폭의 적정성 여부는 시장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통해 보험시장에서 평가되고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본적으로는 준비금 등 계리제도와 보험료 산출체계를 구별함으로써 다양한 보험료 산출과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정보공시 강화로 효과적인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kiri](#)

3) 금융감독원(2012. 3. 12), 「보험회사의 보험료 조정 동향 및 감독 방향」, 보도참고자료.

4) 연합뉴스(2012. 3. 15), 「생명보험료 5% 이내, 실손보험료 10~20% 인상 가다」.